

2022학년도 제4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2023. 2. 23.(목) 10:30 ~ 11:35	
장소	대학본부 본관 612호 중회의실	
참석 현황	재적위원	16명
	참석위원	13명 권수열(의장), 김선아(교무처장), 강상규(인문대 교수대표), 이궁희(자연대 교수대표), 이봉민(교육대 교수대표), 변지원(교수회), 노재웅(직장협의회대표), 백승희(직장협의회대표), 이근우(국공립대학노조대표), 윤형식(국공립대학노조대표), 임대호(조교협의회대표), 이현욱(학생대표), 빈원영(외부위원)
	불참위원	3명 이석호(기획처장), 박강우(사회대 교수대표), 강호준(학생대표)
	기타참석	김영하(교무과장), 최형숙(대학원행정실팀장), 엄계숙(교원인사팀장), 김자은(교무관리팀장), 정서진(교무관리주무관)
심의안건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경영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전임교원 겸임근무 등에 관한 사항
안건 심의 결과	<p>(심의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경영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원안 가결</p> <p>(심의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전임교원 겸임근무 등에 관한 사항 ☞ 원안 가결</p>	

2022학년도 제4회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 발언요지

< 1. 성원 보고 >

- 의 장 권수열 2022학년도 제4회 대학평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교 무 과 장 평의원 16명 중 13명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

- 의 장 권수열 2022학년도 제4회 대학평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지난 회 [2022학년도 제3회 대학평의위원회 결과 보고] >

- 의 장 권수열 전차 회의 결과 보고 부탁드립니다.
- 교 무 과 장 2022학년도 제3회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함
- 의 장 권수열 전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 평 의 원 일동 예.

- 의 장 권수열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본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안건 상정 및 심의 >

안건 1. 경영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에 관한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의 장 권수열 제1호 안건은 대학원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대학원행정실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 대학원행정실팀장 '경영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에 관한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설명
- 의 장 권수열 평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민 평의원 학칙 시행은 3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OBHR 학위명은 다음연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OBHR전공의 경우에 시행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제2조의 '이 학칙 시행 당시'라는 말은 앞의 3월 1일 시행을 말하는 것인지 2024학년도 3월 1일 시행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현재 재학생인데 학위를 2024학년도 2월에 졸업하는 분들은 기존 전공명으로 졸업이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지와 그 다음연도 여름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변경되는 이름으로 졸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노재웅 평의원** DS전공은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OBHR전공은 2024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이죠.
- 교무과장**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면 이것은 모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집을 OBHR 전공 또는 DS전공을 하려면 3월 1일부터 시행을 해줘야 모집을 할 수 있고, 졸업 기준으로 했을 때 전공이 학위명은 부칙에 있는 것에 따라서 OBHR전공의 학위명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의장 권수열**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지 않고 일정을 나눠서 진행하니까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궁희 평의원**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심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권수열** 교무과장님 말씀처럼 신입생을 뽑고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한꺼번에 심의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 변지원 평의원** 이궁희 교수님 말씀처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만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의장 권수열** 원칙적으로 하려면 두 분 말씀이 맞으나 운영상 학생들의 입학 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학원에서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안건을 통과해도 될까요?
- 평의원 일동** 예.
- 의장 권수열** 그러면 모든 분들이 찬성해 주셔서 이 안건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전임교원 겸임근무 등에 관한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 의장 권수열** 제2호 안건은 교무과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교원인사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교원인사팀장** ‘전임교원 겸임근무 등에 관한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설명
- 의장 권수열** 이 안을 변경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었고 변경하려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팀장** 우리 대학은 단과대학교 프라임칼리지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사실 겸임에 관한 근거 조항이 학칙상에 없었습니다. 규정상에만 겸임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융·복합 학과들이 신설되면 본인 소속 이외에 다른 학과들에서 교수님들이 활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칙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했습니다.
- 의장 권수열** 학칙에 없지만, 겸임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신설의 경우나 프라임칼리지에 단과대학 소속 교수님들이 학부장직을 맡을 때 등을 위해 조문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게 이 안건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사 임용 근거 조항은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맞춰 우리 조항 번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 변지원 평의원** 겸임 관련 조항이 생기면 겸임에 대한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면 겸임과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규정이 생기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따라오게 돼서 학교 구조로 보면 파급력이 큰 규정인데 왜 이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선아 평의원** 교무처에서 이걸 준비하면서 알아본 내용은 대학원은 겸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도 보면 전공 분야 학과가 대학원에 연결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하나의 소속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별도로 겸임으로서 발령을 내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칙을 저희가 준비하게 된 이유는 소속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내 교수님들께서 프라임칼리지에서도 강의를 하시지만 프라임칼리지 어떤 전공에 소속이 있다 등이 명기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수님들 간에 강의를 맡아준 수준으로서만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프라임칼리지에서 강의를 몇 과목 이상을 했을 때 프라임칼리지의 소속 교수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교수님께 어떤 처우를 해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교무처가 규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학칙이기 때문에 겸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문구만 명기한 것이고요. 규정을 제정할 때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형태의 겸임 근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등 세부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타 대학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기초 교양교육원에 기존 학내 교수님을 겸임으로 발령을 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속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초 교양 쪽을 좀 더 강화하는 거죠. 우리 학교도 학과를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소속을 겸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봉민 평의원** 제11조 1항을 볼 때 다른 대학과의 차이점이 ‘1개 학과(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앞의 세 조직 중에 한 개라는 뜻인가요? 대학원의 1개 학과라는 뜻인가요? 겸임의 경우 학장이나 부처장 정도까지만 겸임이 학칙에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겸임이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학장이나 학부장을 제외한 교수도 겸임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려면 이 1개 학과(부)라는 표현은 세 가지 조직 중에 하나에는 소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김선아 평의원** 네 맞습니다.
- 교원인사팀장**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 하나에는 소속이 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말씀처럼 본 소속은 하나이나 다른 겸임을 하기 위해 2항이 신설되는 내용이고,

타 대학들을 확인해보면 본 학과와 연계된 대학원은 같은 소속으로 보기 때문에 겸임 발령을 별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김선아 평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회의체에서도 논의되었던 부분인데요. 1개 학과(부)라는 표현을 일단 그대로 두기로 한 이유는 이 문구를 뺐을 때 이미 11조 1항에 의해서 겸임이 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학원의 소속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학부와 대학원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겸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속으로 보기 때문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변지원 평의원** 학부를 주 기반으로 하지만 그 학과에서 대학원으로 T.O를 받아서 교수님을 모집한 사례가 있어서 1항이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선아 평의원** 우리가 T.O를 그렇게 받았지만, 그분들 소속은 다 학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속 자체는 학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도로 대학원 소속으로만 되어있지 않아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 장 권수열** 변지원 평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2항을 신설하는데 1항에 있는 1개 학과(부)가 있어서 모순이 좀 생기는 하네요. 사실 2항을 만들게 되면 1항에 1개 학과(부)라는 문구를 없애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간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단 두고 운영하자고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 봅니다.

○**김선아 평의원** 규정을 제정할 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상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웅 평의원** 이 안건과는 별개인데요. 타 대학은 학칙에 보면 교수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대학은 바로 규정으로 넘어가거든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 장 권수열** 우리 학교가 타 대학과 교수시간의 관점, 적용 사례들이 달라서 다른 대학처럼 30주라고 정하기 어려우므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고 규정을 운영했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진행했던 것이라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이나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변지원 평의원** 이 학칙이 신설되면 대학원 또는 프라임칼리지는 겸임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의 장 권수열** 제 생각에는 같은 학과의 대학과 대학원은 겸임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프라임칼리지가 다른 학과의 어떤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 겸임 발령을 낼 것이고, 변지원 평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본인이 소속된 대학과 대학원의 관계는 겸임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변지원 평의원** 아마도 지금 1항의 대학원의 1개 학과 이 경우에는 대학원만 있는 학과에 한층함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기에 이런 배경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고 했을 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 무 과 장** 일단은 1항의 대학원의 1개 학과라는 것은 대학원의 1개가 아니라 단과대학이든, 프라임칼리지든, 대학원이든 어디에 소속되어있든 1개 학과(부)에 소속이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것은 다른 대학도 1개라는 말이 없지만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특수대학원인데 특수대학원의 학과는 전임교원 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의 학과에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소속 학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서강의를 하고 그 학과의 운영에 관여하려면 겸임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겸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규정에서는 겸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학칙에 없어서 학칙에 근거를 넣는 것이고요. 아까 교수시간에 대한 것도 학칙 위의 상위 기준 법령이 있으므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근우 평의원** 겸임을 하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김선아 평의원** 겸임 근무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칙을 근거로 규정을 만들게 되면 규정 속에 겸임교원의 인정 범위 등이 명확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임칼리지에서 강의만 맡아서 해주시는 경우는 겸임 근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의하면서 운영까지도 지원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 데 이렇게 운영까지 하시면 소속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는 겸임 발령을 내서 프라임칼리지 어떤 전공의 교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우 평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만큼 행정적인 부분이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수의 인정 등 구체적으로 좀 더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 장 권수열** 겸임 발령의 행정 처리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학교에서 규정을 잘 만드시면 행정적인 구성은 지금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변지원 평의원**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비문이기 때문에 '총장은 필요한 경우'라고 하든지 다른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봉민 평의원** 저는 총장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절차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총장은 이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 교원인사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총장이'가 아니라 '총장은'입니다.
- 이금희 평의원** 총장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의사결정기구가 정하는 것이 총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변지원 평의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라고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봉민 평의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검색 되는 것으로 봐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의 장 권수열** 평의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이 문장을 바꿔서 다시 올리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다른 대학 사례들에서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으니 통과하자고 하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 평 의 원 일동** 예.
- 의 장 권수열** 그럼 찬성해 주신 것으로 해서 심의 안건 2호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들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 5. 기타의견 >

- 의 장 권수열**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규 평의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경영대학원 차원의 이야기로 우리가 논의했잖아요. 사실 요즘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가 대학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 대학을 운영하던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생기는 수많은 상황이 걱정됩니다. 학교의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교수 방법, 과제를 내는 방안 등을 우리가 직접 써보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지를 실감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너무나 많이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과나 전공 명칭을 바꾸는 것들이 본질인 것처럼 인식하면 안 되고 새로운 충격들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 김선아 평의원** 그렇지 않아도 교무처에서 그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앞으로 과제물을 가져갈 수 있을까, 과제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도 있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하고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경영대학원 담당이 지금 없으셔서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OBHR전공의 경우 조직행동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전공 명칭으로 구체화하는 부분이고, DS전공의 경우도 그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하시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학칙 개정안에서 이게 명칭 변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담당자로서는 그 내용 중심으로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 의 장 권수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무처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6. 마무리 말씀 >

- 의 장 권수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 의 원 일동** 예.

< 7. 폐회 선언 >

- 의 장 권수열** 2022학년도 제4회 대학평의원회를 마칩니다. 끝.